

문 서 번 호 : GOJA-MH151126-004

2015.11.25

시 행 일 자 : 2015.11.26

수 신 :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참 조 : 특별공급 담당자님

제 목 : 장애인 특별공급 협조 요청의 건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에서 건설하는 경기 안산시 「힐스테이트 중앙」의 특별공급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1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특별공급 추천 대상자 명단 송부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구 분	예정사항
분양 승인	2015.12.03.(목)
입주자 모집공고	2015.12.03.(목), 문화일보(석간)
특별공급 일정	청 약 접수 : 2015.12.08.(화), 10:00~14:00 당첨자발표 : 2005.12.16.(수), 17:00
장 소	1535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73(고잔동532번지) 힐스테이트 중앙 건본주택

※ 특별공급 신청 대상 세대 및 필요서류는 첨부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힐스테이트 중앙 분양사무소 (직인생략)

<별첨 #01. 특별공급 안내문>

힐스테이트 중앙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1. 공급개요 및 배정기준

■ 공급위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73 (고잔동 532번지)일원

■ 공급규모

공동주택(아파트) 지하2층, 지상27층~37층 8개동 총 1,152세대 (조합원공급 495세대, 일반공급 657세대)중 일반공급 657세대 및 부대시설

■ 기관 추천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주택형					
59A	59B	74A	74B	84	소계
32	11	11	1	7	62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으로 면적 및 공급세대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대상자별 배정기준

대상자	배정기준	비고
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	85㎡이하 주택건설량 10%범위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

2.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대상자 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중소기업근로자, 10년이상장기복무군인)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12.03. 예정)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으신분. 단, 장애인은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자에 한함.

- 중소기업 근로자와 군인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이주대책 대상자는 제외)

- ① 청약예금 :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된 자.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납입인정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단, 신청 전에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신청불가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1항 제3호, 제4호, 제4호의2 및 동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에 해당되는 주택형만 청약할 수 있음.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납입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예치금액이 포함되는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면적 중 하나를 신청일까지 선택하여야 함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5, 별표 1의2)

구 분	광주시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5.02.27)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유의사항

- 1세대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로 당첨이 취소됨.(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 “무주택구성원”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함.
 -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에 한정한다)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
- 특별공급 신청자는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 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특별공급 신청미달 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부적격된 특별공급주택, 미계약, 계약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주택은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됨.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 검색결과에 따른 세대원의 주택소유여부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을 수 있음.
- 공급별 구비 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신청자, 배우자, 세대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정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에 계약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청약접수시 무주택 서약서 작성으로 입증서류 제출을 생각하며, 당첨자의 전산검색 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무주택 입증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함.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제19조 제 2항 제1호 제외)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 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 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공동주택)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음.
- 특별공급 신청 이후에는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취소나 정정할 수 없음.
-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업무는 사업주체가 담당하며, 동·호수 배정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과 일괄하여 실시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5.14. 예정) 현재, 청약신청자나 청약 신청자의 세대에 속한 자 중에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게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 바람.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음(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주택형의 경우 공급주택 중 최저층을 말함)

3. 특별공급 일정 및 방법

■ 공급일정

신청일자	당첨자 선정	동호수 발표	계약체결	장소
2015.12.08.(화) 10:00~14:00	2015.12.08(화) 17:00	2015.12.16.(수)	2015.12.21.(월) 2015.12.23.(수)	당사 견본주택

※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전으로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조하기 바람

※ 특별공급 신청 및 계약체결은 당사 견본주택에 방문하여야만 가능

※ 당첨 동호수 확인 방법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2you.com)

■ 당선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 및 해당기관에서 확인서(추천서)를 발급 받은 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당사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 및 계약불가]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청약 경쟁률이 1:1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자 선정 방법은 추첨에 의함

■ 당선자 선정 유의사항

-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음.
 - 사업주체는 특별공급의 당첨자만을 선정하며, 동·호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함. (동·호 배정 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4항의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 중 동·호수 배정업무를 추첨기관(전산관리지정기관)에서 수행하므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일시와 동·호수 배정결과 발표일시가 상이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부적격세대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 군인으로서 주택법 제75조제2항의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한 1순위자의 경우에는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수도권 거주자로 봄.

4. 특별공급 서류 및 견본위치

■ 구비서류 안내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특별공급신청서/무주택서약서	-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무주택 구성원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서명확인서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 확인 가능한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포함하여 발급요망
	○		주민등록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사도 지역 거주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에 안될 경우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 (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단독세대 및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	청약통장 가입(순위) 확인서	본인	· 금융결제원(APT2you) 홈페이지 및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발급 · 철거민, 국가유공자 및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장애인 제도(그 외 특별공급 대상자는 제출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본인	·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해당 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등 기타서류로 청약신청 불가), 국가유공자는 보훈청 관리명단으로 접수
제3자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청약자	· 대리신청시(본인 외 모두 3자로 간주함) - 위임장은 접수장소
		○	인감도장	청약자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시는 제출생략
		○	인감증명서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위임용. 단, 외국인의 경우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관한 공정증서
		○	신분증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도장	대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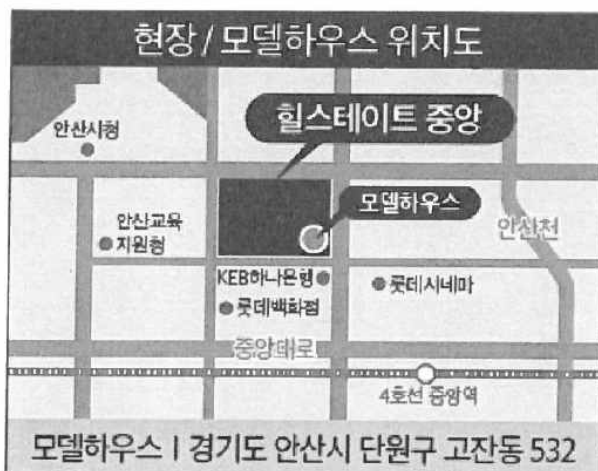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년12월 3일 예정)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기 바람.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함.

■ 견본주택 위치 및 기타 문의사항



홈페이지 : <http://www.hillstate.co.kr>

견본주택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2번지

문의전화 : 031-487-9677

<별첨 #02. 힐스테이트 중앙 참고자료>

■ 조감도



■ 단지배치도

